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징수과

( 2017. 1. 23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유 준 상 ]**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## **검토보고서**

### **1. 안건명**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제출일자 : 2017년 1월 10일(화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#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- 2017년 1월 11일(수)

### **4. 관계법규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

### **5. 개정이유**

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제6조 제1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 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,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## 6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 
(안 제6조 제1항 제11호)
- 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있는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,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는 붙여 쓰기 적용  
(안 제6조 제1항 제4호)

## 7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그동안 모범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제정·시행으로 자치법규의 통일된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, 서울특별시의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,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으며,

이에,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으며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할 경우,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연간 약526천원으로 미미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해당 수입 감소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 할 예정임.

따라서,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고,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, 또한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 관 계 법령

##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10.8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, 2015.10.8., 타법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,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.10.8〉

**제2조(선발)**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선발한다.〈개정 2010.1.7, 2015.10.8〉

1. 모범납세자 :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"지방세"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〈개정 2010.1.7, 2010.7.15, 2011.7.28〉
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. 〈개정 2010.1.7〉
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〈개정 2010.1.7〉
4. 성실납세자 :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〈신설 2010.1.7〉

**제3조(지원)**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.〈개정 2010.1.7〉

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, 수수료 면제,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〈개정 2010.1.7〉

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, 전자고지·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.〈개정 2010.1.7〉

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창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,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.〈개정 2010.1.7〉

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 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.〈신설 2010.1.7〉

## 지방자치법

(시행 2016.11.30.)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